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제한>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22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46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71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Ⅰ.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안) ····· 1

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안) ····· 3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안) ····· 4

Ⅱ. 검토의견 ····· 5

1. 개정안의 내용 ····· 5

2. 현행법 및 유사제도 현황 ····· 7

3. 검토의견 ····· 12

※ 참고자료 ····· 16

Ⅰ.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천호・김선교・김예지・안철수・정성국・윤재옥
김장겸・임종득・엄태영・유용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 의안번호 : 11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

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수진・조정훈・박충권・이종배・김장겸・김민전 임이자・김예지・최형두・최보윤・구자근・박준태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 의안번호 : 134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김준형・서영교・송옥주・민형배・김주영
김재원・김영배・정성호・박홍근・남인순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 의안번호 : 227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서천호의원안·최수진의원안)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경우(한정애의원안)에 그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이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3건의 개정안은 수당등 지급 중지의 사유와 지급 중지되는 수당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소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1]과 같음.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서천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수당등의 지급 중지 사유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지급 중지되는 수당등의 범위	수당	수당	수당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중지된 수당등의 소급지급 사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적 용 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구금된 경우부터 적용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서천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신설>	제14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①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구속된 날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금지 등)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①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현행법 및 유사 제도 현황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 등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있음[1].

이 중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이고, **입법활동비**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하되 회의에 결석할 경우 감액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 지급되고 있음.

---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표-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등

구 분	근거조항	지급목적	지급성격	비고
수 당*	제7조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	급여 (매월지급)	*국회법 §163조①에 따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출석정지기간동안 수당 등 1/2감액[2]
입법활동비	제11조	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급	지원 경비 (매월지급)	
특별활동비	제12조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경비 (청구에 의한 지급)	*정액지급경비는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 비	제14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시 지급		

* 기존에 사용되던 세비(歲費)라는 용어는 「(구) 국회의원보수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 이후 관례화 하였으나,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세비 대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3] 징계를 받는 경우[4] 이외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등이 지급됨.

---

2) 같은 조 제2항은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방해)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에는 수당등의 1/2을 2개월 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등을 3개월간 미지급하도록 정함.

3)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등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수 등의 지급이 중지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5]을 지급하지 않되,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6].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7]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며,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당 기간 중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8]

---

5)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u>의정활동비</u>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u>월정수당</u>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u>여비</u>

6)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을 「각 시·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시:「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u>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u>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지방자치법」 <u>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u>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u>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u>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50%(연봉제 공무원은 40%)를,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연봉제 공무원은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9)]

[표-4] 보수 등 지급정지 현황 비교

구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급여성 경비	월정수당	연봉월액,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봉급(연봉월액),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원경비	의정활동비, 여비	-		-	
지급정지 사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지급정지 항목	-월정수당 미지급 (12개 시·도의회) -의정활동비 미지급 (17개 시·도의회)	최초 3개월	-연봉월액 60% 감액 -가족수당 50% 감액 -정액급식비 및	최초 3개월	-봉급 50%(연봉월액 60%) 감액 -가족수당 50% 감액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월당 1/6감액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9)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table>
<tr><th>구분</th><th>지방의회의원</th><th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th><th colspan="2">공무원</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여비 미지급
(10개 시·도의회)</td><td></td><td>직급보조비 미지급</td><td></td><td>-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미지급</td></tr>
<tr><td>3개월 경과 후</td><td>-연봉월액 80% 감액
-가족수당 70% 감액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미지급</td><td>3개월 경과 후</td><td>-봉급 70%(연봉월액 80%) 감액
-가족수당 70% 감액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월당 1/6 감액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미지급</td></tr>
<tr><td>무죄 확정시 소급지급 항목</td><td>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td><td colspan="2">연봉월액</td><td colspan="2">보수전액
※ 단,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소급 제외</td></tr>
</table>

자료: 국회사무처

3. 검토의견

3건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등을 국회의원이 구속·구금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무죄 등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보수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원 <u>수당 등 지급 중지의 적정성</u>에 관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나 국가·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 봉급을 감액하는 것은 해당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른 것인데, 국회의원은 구속 중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17개 시·도 의회 전체가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 중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고, 이 중 12개 시·도 의회의 경우는 급여성 경비인 월정수당의

지급까지도 중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22.12)[10]에 따라 최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유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수당등 지급 중지 사유의 적정성**에 관한 것임.

서천호의원안과 최수진의원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정애의원안은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5] 개정안별 수당등의 지급중지 사유

구 분	서천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수당등의 지급 중지 사유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 등이 미지급 또는 감액되는 경우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로 한정되어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로 규정하게 되면 **공소 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등의 지급이 제한되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10)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제2022-959호, 2022년 12월 19일 의결)을 통해 각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우려도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당등 지급 중지와의 형평성, 최소침해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당등의 지급 중지 사유를 합목적적인 범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급 중지 대상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것임

서천호의원안과 최수진의원안은 법정 요건 해당 시 지급이 중지되는 수당등의 종류를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로 규정하고 있고, 한정애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까지도 지급이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6] 개정안별 지급 중지 대상 수당등의 범위

구 분	서천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지급 중지되는 수당등의 범위	수 당	수 당	수 당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 또는 월정 지원경비에 해당하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의 소요비용과 정책연구용역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성 경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구속 시 지급이 제한되는 수당등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급 중지의 실효성, 과잉금지의 원칙 및 각종 수당등의 종류별 지급 목적과 취지 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요약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능성의 정도, 지방의회의원·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및 공소 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시 수당등 지급 중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려는 취지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6.5.,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60)」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참고 1 국회의원 수당등 근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수당) ① 법 제7조 및 규칙 제2조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타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정수당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3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관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100분의 9를 지급한다.

제3조(입법활동비) 법 제11조 및 규칙 제3조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법활동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특별활동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참고 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근거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참고 3 국회의원 수당 등 감액 관련 규정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참고 4 지방자치단체장 보수 감액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참고 5 공무원보수 감액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정근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 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